

신혼부부 특별공급 | 사전서류접수 구비서류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3개월~1년간 청약(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 | | | |
| 공통서류 | ○ | | 신분증 | 당첨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지참 필수)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당첨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당첨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당첨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첨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당첨자 | •발급기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출입기록 표시 필수,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단신부임 입증서류 | 당첨자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연속 90일 초과) 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세대원 | •당첨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발급기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 ○ | | 복무확인서 | 당첨자 |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
| 신혼부부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당첨자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당첨자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 | ○ | | 소득증빙 서류 | 당첨자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당첨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캡처)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당첨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능)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당첨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당첨자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임신중인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원 | •건본주택에 비치(비사업자의 경우) | |
| 대리인 추가서류 | ○ | | 위임장 |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불가 |
| |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 본인 확인 |
| | ○ | | 대리인 도장 | 대리인 | •서명가능 |
|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해당자 | 해당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해당자 | 해당자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 해당자 | 해당자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해당자 | 해당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3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및 주소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서류접수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52조 제4항에 의거, 당첨자 서류는 최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매월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자영업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날인)
-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무직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첨제(30%) 자산입증 제출서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자료(본인 및 세대원)
- ②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